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11058

이 훈명 숙성회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21.04.20 jjhj2900@daum.net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4.12.03

이춘명숙성회 정보공개서

(주)다함컴퍼니는「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주)다함컴퍼니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 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 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 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 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 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 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 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 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 389, 102동 101호, 104동 101호(삼산동, 힐스테이지)

전화: 1544-7161 팩스: 032-556-8881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1544-7161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田.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Ⅷ. 교육ㆍ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 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에 등록한 정보공개 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 ㆍ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 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 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알림마당'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 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ㅇ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 | 영업표지 | | 주 | 소 | | | |
|----------|------------|----------------|--|-----------|----|--------------|--|
| | 이춘명숙성회 외 8 | |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 389, 102동 101호, 104동 101호(삼산동, 힐스테이지) | | | | |
| (주)다함컴퍼니 | 법인 설립등기일 | 사업자등록일 | 대표자 | 대표전화 | 번호 | 대표팩스번호 | |
| | 2017.07.28 | 2017.07.28 | 정현진 | 1544-7161 | | 032-556-8881 | |
| | 법인등록번호 | 120111-0889115 | 사업자등 | 등록번호 | 3 | 03-87-00706 | |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ㅇ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계 | 이름/상호 | 영업표지 | 주 소 | | | | | |
|--------|-------|-------------------|--|-----------------------------------|-------------------|--|--|--|
| | 저성기 | 이춘명숙성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 | 제로 389, 102동 101호 힐스테이지) | ·, 104동 101호(삼산동, | | | |
| 대표이사 | 정현진 | 외 8 | 대표자 | 대표전화번호 | 대표팩스번호 | | | |
| | | | 정현진 | 1544-7161 | 032-556-8881 | | | |
| 관계 | 이름/상호 | 영업표지 | | 주 소 | | | | |
| HUIOLH | | 이춘명숙성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 389, 102동 101호, 104동 101호(삼산동, 힐스테이지) | | | | | |
| 사내이사 | 이효근 | 외 8 | 대표자 | 대표전화번호 | 대표팩스번호 | | | |
| | | | 정현진 | 1544-7161 | 032-556-8881 | | | |
| 관계 | 이름/상호 | 영업표지 | | 주 소 | | | | |
| | | 양정우 이춘명숙성회 외 8 | | 경구 장제로 389, 102등 11호(삼산동, 힐스테이 | | | | |
| 사내이사 | 앙싱구 | | 대표자 | 대표전화번호 | 대표팩스번호 | | | |
| | | | 정현진 | 1544-7161 | 032-556-8881 | | |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o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이춘명숙성회라 합니다)의 내용

ㅇ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 구 분 | 내 용 | 추가 설명 |
|----------|------------|---------------------|
| 명 칭 | 이춘명숙성회 | |
| 상 호 | 이춘명숙성회 OO점 | |
| | 이춘명숙성회 | 등록번호: 4018191630000 |
| 상표(서비스표) | 이춘명 | 숙성회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연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매출액 |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
|------|-----------|-----------|---------|-----------|---------|---------|
| 2021 | 3,844,608 | 3,619,673 | 224,934 | 4,333,592 | 323,134 | 118,413 |
| 2022 | 4,270,614 | 3,498,974 | 771,640 | 6,372,258 | 654,268 | 546,705 |
| 2023 | 5,400,129 | 4,469,115 | 931,014 | 8,847,727 | 401,897 | 159,374 |

- o 그 근거자료는 별지와 같습니다.
-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 ㅇ 꼬치마요는 2022년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ㅇ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 | 성 지이 | 사업경력 | | | | | |
|--------------|-----|------|---------------|---------------|-------|--|--|--|
| | | 한 역위 | 기간 | 직위 | 담당 업무 | | | |
| 가맹사업 | 정현진 | 대표이사 | 2017.07.28~현재 | (주)다함컴퍼니 대표이사 | 업무총괄 | | | |
| | 이효근 | 사내이사 | 2017.07.28~현재 | (주)다함컴퍼니 사내이사 | 업무총괄 | | | |
| 관련임원 | 양정우 | 사내이사 | 2017.07.28~현재 | (주)다함컴퍼니 사내이사 | 업무총괄 | | |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ㅇ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점 | 임원: | 수(명) | 지의스/명〉 |
|---------------|-----|------|--------|
| 시점 | 상근 | 비상근 | 직원수(명) |
| 2023년 12월 31일 | 3 | - | 25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o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 관계 | 상호/이름 | 구분 | 기간 | 사업내용 |
|------|--------|---------|-----------------|---|
| 가맹본부 | ㈜다함컴퍼니 | 가맹사업 경영 | 2019.03.18 ~ 현재 | 금화왕돈까스(등록번호:20190567)라 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경영 |
| 가맹본부 | ㈜다함컴퍼니 | 가맹사업 경영 | 2017.03.01 ~ 현재 | 북경짜장(등록번호:20170524)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경영 |
| 가맹본부 | ㈜다함컴퍼니 | 가맹사업 경영 | 2017.07.28 ~ 현재 | 백하돼지생갈비(등록번호:20180029) 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경영 |
| 가맹본부 | ㈜다함컴퍼니 | 가맹사업 경영 | 2019.12.19~현재 | 양주족(등록번호:20191416)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경영 |
| 가맹본부 | ㈜다함컴퍼니 | 가맹사업 경영 | 2019.12.19~현재 | 계연탄(등록번호:20191417)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경영 |
| 가맹본부 | ㈜다함컴퍼니 | 가맹사업 경영 | 예정 | 이춘명숙성회(등록번호:20211058) 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경영 |
| 가맹본부 | ㈜다함컴퍼니 | 가맹사업 경영 | 예정 | 다함(등록번호:20211149)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경영 |
| 가맹본부 | ㈜다함컴퍼니 | 가맹사업 경영 | 예정 | 산더미뼈해장국(등록번호:20211148))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경영 |
| 가맹본부 | ㈜다함컴퍼니 | 가맹사업 경영 | 2022.06.15~현재 | 꼬치마요(등록번호:20211150)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경영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ㅇ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칭 | 권리내용 |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 등록번호 | 소유자 (등록신청자) | 존속기간 만료일 |
|--------|---|---------------------|------------------|----------------|-------------|
| 이춘명숙성회 | 해당상표를 가맹점운영권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 | 2022.01.07. 등록 | 등록 4018191630000 | ㈜다함컴퍼니 | 2032.01.07. |

o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o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이춘명숙성회 가맹사업 현황

1. 이춘명숙성회를 시작한 날 : 가맹계약 체결사실 없음

(직영점을 시작한 날 : 2021년 11월 18일)

2. 이춘명숙성회 연혁

| 가맹본부 상호 | 영업표지 | 대표자 | 가맹사업 경영 기간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주)다함컴퍼니 | 이춘명숙성회 | 정현진 | 예정 |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 389, 102동 101호, 104동 101호(삼산동, 힐스테이지) |

3. 이춘명숙성회 업종

| 영업표지 | 업종 | | | | |
|--------|-------|-----------|--|--|--|
| 이ᄎ며ᄉ서칭 | 대분류 | 소분류(주요상품) | | | |
| 이순명숙성외 | 기타 외식 | 숙성회 | | | |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이춘명숙성회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 지역 | 2021.12.31 | | | 2022.12.31 | | | 2023.12.31 | | |
|----------|------------|------|------|------------|------|------|------------|------|------|
|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 전체 | 1 | | 1 | 1 | | 1 | 2 | | 2 |
| 서울 | | | | | | | | | |
| 부산 | | | | | | | | | |
| 대구 | | | | | | | | | |
| 인천 | | | | | | | 1 | | 1 |
| 광주 | | | | | | | | | |
| 대전 | | | | | | | | | |
| 울산 | | | | | | | | | |
| 세종 | | | | | | | | | |
| 경기 | 1 | | 1 | 1 | | 1 | 1 | | 1 |
| 강원 | | | | | | | | | |
| 강원 충북 | | | | | | | | | |
| 충남 | | | | | | | | | |
| 전북 | | | | | | | | | |
| 전남 | | | | | | | | | |
| 경북 | | | | | | | | | |
| 경남 | | | | | | | | | |
| 제주 |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이춘명숙성회 가맹점 수

o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단위: 개)

| 연도 | 연초 | 신규 개점 | 계약 종료 | 계약 해지 | 명의 변경 | 연말 |
|------|----|-------|-------|-------|-------|----|
| 2021 | | | | | | |
| 2022 | | | | | | |
| 2023 | | | | | | |

6. 이춘명숙성회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o 당사의 이춘명숙성회 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 구분 |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 | 정보공개서 업종 | | 가맹점/직영점의 수 | | | |
|------|---------------|---------|----------|------|-------------|-------------|-------------|--|
| 十世 | 경오/이름 | 8 급표시 | 등록번호 | ㅂㅇ | 2021.12.31. | 2022.12.31. | 2023.12.31. | |
| 가맹본부 | ㈜다함컴퍼니 | 금화왕돈까스 | 20190567 | 돈까스 | 45/0 | 47/0 | 50/0 | |
| 가맹본부 | ㈜다함컴퍼니 | 북경짜장 | 20170524 | 중식 | 5/0 | 4/0 | 3/0 | |
| 가맹본부 | ㈜다함컴퍼니 | 백하돼지생갈비 | 20180029 | 한식 | 3/0 | 1/0 | 1/0 | |
| 가맹본부 | ㈜다함컴퍼니 | 양주족 | 20191416 | 한식 | 1/0 | 0/0 | 0/0 | |
| 가맹본부 | ㈜다함컴퍼니 | 계연탄 | 20191417 | 한식 | 0/0 | 0/0 | 0/0 | |
| 가맹본부 | ㈜다함컴퍼니 | 이춘명숙성회 | 20211058 | 기타외식 | 0/1 | 0/1 | 0/2 | |
| 가맹본부 | ㈜다함컴퍼니 | 다함 | 20211149 | 기타외식 | 0/0 | 0/0 | 0/0 | |
| 가맹본부 | ㈜다함컴퍼니 | 산더미뼈해장국 | 20211148 | 한식 | 0/0 | 0/0 | 0/0 | |
| 가맹본부 | ㈜다함컴퍼니 | 꼬치마요 | 20211150 | 주점 | 0/0 | 2/0 | 9/0 | |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ㅇ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 | |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 | | | | |
|----|------------------|--------------|-------------------------|------------------|-------------|----|-------------|----|
| 지역 | 2023년 말 가맹점 수 | 연간 평균 매출액 | |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 | | 평균 (하한) | 비고 |
| | 766 T | 연간 평균 매출액 | 면적 3.3㎡당 | 상한 | 면적 3.3㎡당 | 하한 | 면적 3.3㎡당 | |
| 전체 | | | | | | | | |
| 서울 | | | | | | | | |
| 부산 | | | | | | | | |
| 대구 | | | | | | | | |
| 인천 | | | | | | | | |
| 광주 | | | | | | | | |
| 대전 | | | | | | | | |
| 울산 | | | | | | | | |
| 세종 | | | | | | | | |
| 경기 | | | | | | | | |
| 강원 | | | | | | | | |
| 충북 | | | | | | | | |
| 충남 | | | | | | | | |
| 전북 | | | | | | | | |
| 전남 | | | | | | | | |
| 경북 | | | | | | | | |
| 경남 | | | | | | | | |
| 제주 | | | | | | | | |

8. 이춘명숙성회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o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가 없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연도 | 영업 중인 가맹점 수 | 평균 영업기간 |
|------|-------------|---------|
| 2023 | - | -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ㅇ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o 당사가 바로 전 사업연도에 가맹본부 전체 가맹사업(이춘명숙성회 외 8개)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금화왕돈까스와 관련하여 사용한 광고 및 판촉비는 이보다 더적을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11. 가맹금 예치

o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치기관 상호 | 담당 지점 | 주소 | 전화번호 |
|---------|-------|-----------------------|-----------|
| 국민은행 | 계양지점 | 인천 계양구 계양문화로 96 강북프라자 | 1599-9999 |

- o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에 작성하여 국민은행에 계약 체결일에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귀하가 국민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예치금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예치하는 방법은 국민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주)다함컴퍼니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 o 귀하는 또한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 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ㅇ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주)와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비고 |
|----------------------|---|------|
| 보험인(보험회사) | 서울보증보험(주) | |
| 보험계약자 | (주)다함컴퍼니 | 가맹본부 |
| 피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 가맹점사업자 | |
| 보험기간 | 발급일로부터 2개월 또는 개점일 중 빠른 날 | |
| 보험금액 | 예치가맹금 | |
| 보장범위 |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IV. 1.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참조 | |
| 지급조건 |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 |
| 보험금의 수령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 |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o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o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o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 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o 귀하가 이춘명숙성회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ㅇ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급 대상 | 예치 대상 여부 | 비고 |
|-----------------|---------------|----------|-------|
| 최초 가맹금 | 가맹본부 | 예치 | 확정 금액 |
| 보증금 가맹본부 | | 예치 | 확정 금액 |
| 기타 비용 |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 예치하지 않음 | 추정 금액 |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금액 | 지급 기한 | 반환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비고 |
|-----|--------|--------|---|----------------|----|
| 총계 | 18,700 | | | | |
| 가맹비 | 11,000 | 계약 체결일 | 당사가 가맹사업법에 의하여 가맹금반환의무가 있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 반환 | 계약금 성격의 금전 | |
| 교육비 | 7,700 | 계약 체결일 | 교육 전 계약해지 시 | 교육 시작 후 | |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 구분 | 금액 | 지급 기한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 비고 |
|---------|--------|--------|-------------------|----|
| 총계 | 10,000 | | | |
| 계약이행보증금 | 10,000 | 계약 체결일 | 금전지급의무 위반, 손해배상 등 | |

o 귀하가 계약이행보증금을 대신하여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는 경우 계약체결 후 5일이내에 귀하가 보증보험사에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보증보험증권(보증금액 500만원)을 발급 받아 당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o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 과 같습니다.

| 구분 |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
| 합계 | 28,700 |
| 가맹비 | 11,000 |
| 교육비 | 7,700 |
| 계약이행보증금(부가세 없음) | 10,000 |

ㅇ 단, 당사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할 경우 귀하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

야 하며, 별도 가맹금 예치를 하지 않습니다.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지급대상 | 금액 | 면적 3.3m ² 당 금액 | 지급기한 | 반환조건 | 비고 |
|-------------------|-------------------|---------|------------------------------|-----------------|-----------------|-----------------|
| 총계 | | 128,888 | | | | 99m²(30평) 기준 |
|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 | 62,700 | 2,090 | | | 외부공사 별도 |
| 간판 | | 5,500 | | | | 전면1면[5m] |
| 싸인물 | 기ᄜᆸᆸᇎᆫ | 1,000 | | | | |
| 주방설비 |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 | 15,000 | | | | 선 결제 필수품목 |
| 주방집기 | 선정업체 | 8,000 | | | | 선 결제 필수품목 |
| 와인셀러 | | 1,450 | | 계약 또는 물품입고 시 | 공사/공급 전 계약취소 | 선 결제 필수품목 |
| 주방닥트 | 협력업체 | 3,300 | | | 게ㅋㄲㅗ | 외부 입상 별도 |
| 테이블 | | 5,016 | | | | 4인석 |
| 의자 | | 2,592 | | | | 12개 기준 |
| 스크린 | 가맹본부 | 12,100 | | | | |
| 음향(스피커,앰프) | | 2,530 | | | | |
| 오픈 비품 | | 2,700 | | | | |
| POS | 협력업체 | 임대 | | | | |
| 초도물품 (원·부재료) | 협력업체 | 7,000 | | | | |

- ㅇ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o 귀하는 위 표에 기재된 비용 중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등을 진행할 경우 매뉴얼비(정보제공과 검수에 대한 비용)로 3.3㎡당 일금삼십삼만원(₩330,000)<부가세 포함> 을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o 소방공사 및 완비, 전기증설 비용, 냉·난방, 화장실, 철거, 가스공사, 전면공사, 소품, 오픈비품, 어닝, 외부닥트, 외부공사 등 기타 위 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 ㅇ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선정 주체 | 선정 기준 |
|------------|--|
| ᄀᆝᄓᆘᅕᆝᇚᅡᆍᆝ |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지역지정→ 가맹희망자 직접조사 또는 가맹희망자 |
| 가맹희망자 | 가 전문업체에 의뢰 → 당사 및 가맹희망자가 동의 시 확정 |

- o 당사는 점포 선정과정에서 귀하에게 조언을 하고, 최종 의사결정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입지선정이 지연되어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른 추가 발생비용은 귀하가 부담합니다.
 -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 o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교육 기준 | 계약ㆍ채용 기준 |
|--------|-----------|--|
| 가맹점사업자 | 특별한 기준 없음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파산, 개인회생 등을 신청하거나 이에 준하는 절차가 개시된 자가 아닐 것 |
| 종업원 | 특별한 기준 없음 | 만19세 이상일 것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

-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 o 이춘명숙성회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 ㅇ 구체적인 물품 내역은 별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지급하는 가맹금은 한 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 1) 비용 부담
- ㅇ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지급대상 | 금액 | 지급기한 | 반환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비고 |
|--------------|--------------------------|--|----------------------------|------------|----------------|---------------------------------------|
| 로열티 | 가맹본부 | 월 취 출 생 신용가 다. 체크가 다. 현금영수증 가 타 각종 페이 결제 현금 등 홀 및 배달 매출 포함의 3.3% | 익월 5일 | | 사용된 비용 | CMS자동이체 신청 |
| SV파견 교육비 | 가맹본부 | 220 (1일外간교육연원SM) 1인기중 | 교육 시작 전 | | | 가맹계약서 제15조 참고 |
| 광고분담금 | 가맹본부 | 광고·판촉 분담기준에 의함 | 광고 실시 전 | 광고시행 이전 | 광고 시행 이후 | |
| 판촉분담금 | 가맹본부 또는 협력업체 (미지정) | 가맹점사업자가 부담 | 판촉 내용별 별도 공지 | - | - | 할인비용, 모바일상품권 등 |
| 교육훈련비 | 가맹본부 | 실비 | 별도 공지 | 교육 전 | 교육 후 | |
| 점포환경개선 비용 | 가맹본부 또는 협력업체 (미지정) |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 | | VII 기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참조 |
| 지연이자 | 가맹본부 | 연 20%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 정해진 금전지급의무의 지급기한을 |

경과했을 시 부담

- 귀하가 당사가 정한 모든 물품(「V. 1.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에 기재된 인테리어, 주방설비, 주방집기, 원부재료 등)과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주류를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로열티를 월 총매출액(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기타 각종 페이 결제, 현금 등 홀 및 배달 매출 포함)의 2.2%(부가세 포함)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 o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바로 전 사업연도의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 ㅇ 당사는 바로 전 사업연도에 이춘명숙성회 가맹사업을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 ㅇ 당사는 귀하의 경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재고관리 및 회계처리 등을 점검하고 가맹본부가 정한 규정 이외의 서비스 취급 여부, 서비스 상태,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관리·감독하고 그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o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가 가맹점의 청결, 위생, 재고관리, 회계처리, 각종설비관리, 원·부자재관리 등이나 기타 점포의 유지 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영업시간 중에 가맹점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 ㅇ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금액 | 지급 기한 | 반환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비고 |
|------|-------|-------|---------------|----------------|---------|
| 총계 | 5,500 | | | | |
| 재가맹비 | 5,500 | 갱신일까지 | 재계약 이후 미반환 | - | 재계약일 기준 |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 o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 ㅇ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이 유효기간 만료 등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o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 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o 귀하가 운영하는 이춘명숙성회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할 비용은 없습니다. 당사로부터 승인받은 양수인은 계약이행보증금, 교육비를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며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신규가맹계약체결을 원하는 경우에는 가맹비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원활한 양도양수를 위하여 양수인에게 회사의 제도, 규약, 금전적 지급의무 등을 설명하는 등 최대한 협조해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o 가맹계약 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해지에 의해 계약이 종료된 경우 귀하는 즉시 당사의 영업표지 등의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중단(홈페이지나 블로그, 지역정보 등 인터넷상의 사용도 포함)하고 이를 철거하며, 당사로부터 교부받은 일체의 자료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의 철거·원상복구의 비용은 귀하가 부담합니다. 다만,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당사가 부담합니다.
- o 귀하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등은 계약의 종료로 인하여 반품이 불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o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이춘명숙성회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 o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o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 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ㆍ하한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 o 당사는 바로 전 사업연도에 이춘명숙성회 가맹사업을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워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이춘명숙성회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2) 당사가 이춘명숙성회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 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 • 용역명 | 제한내용 및 조건 | 위반 시 책임 | 비고 |
|----------|---------------------|--|------------------------|
| 별지 참조 | 기재된 제품 이외는 판매 불가 | 1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2회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 최초 시정 요구한 날부터 2개월 후에 계약해지 | 문의 : 당사 (1544-7161) |

- ㅇ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o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귀하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ㆍ용역의 판매 제한
- o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상대방(고객) | 상품 • 용역명 | 제한내용 및 조건 | 위반 시 책임 |
|---------------|--------------|----------------|---------------------|
| 74 TII OI +II | | | 1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
| 경쟁업체 | 당사 또는 당사의 | 로부터 시성 거래상내방에게 |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
| | 지정업체로부터 | | *2회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
| 다른 가맹점사업자 |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 | | 시정되지 않는 경우 최초 시정 |
| | | | 요구한 날부터 2개월 후에 계약해지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 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o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o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 • 용역명 | 권장가격(단위: 원) | 가격 통보 방법 | 비고 |
|----------|-------------|------------|----|
| 별지 | 참조 | 홈페이지 또는 공문 | |

o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혐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 o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o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한 업종 범위 |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 |
|----------------------|-------------|---|
| 요독한 법은 현지 | 가맹본부 계열회사 | |
| 회(숙성회)를 주메뉴로 판매하는 업종 | 이춘명숙성회 | - |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 o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설정 | 기준 | 설정방법 |
|------------|---------------------------|------------------------------------|
| 특수상권일 경우 | 특수상권내 | 가맹계약서 |
| 특수상권이 아닐경우 | 가맹점의 출입문을 기준으로 반경 500m | 가정계약시 (별지에 영업지역을 표시하는 경우 그에 따름) |

※ 특수상권이라함은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쇼핑센터, 지하상가, 대학, 기차역, 전철역, 터미널, 공항, 경기장, 휴게소, 호텔, 종합병원, 시장 등에 상응하는 별도의 독립상권을 의미합니다.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 o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 재조정 절차 | 동의를 얻는 방법 |
|----------------|-----------------------|-----------------|-------------------|
| ① 재 | 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 | |
| 개 | 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 | 일부터 90일 사이에 가맹점 | |
| 이 | 발생하는 경우 | 사업자에게 영업지역 재조 | 가맹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
| ② 해 | 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 | 정 등 조건 변경에 대한 통 | 동의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 |
| 기 |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 지 → 변경된 계약조건에 대 | 우 영업지역 변경 등 계약갱신 |
| 3 4 | 느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 한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 | 진행 후 신규 입점 가능 |
| 해 | 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 업지역 변경 완료 및 계약 | |
| 변 | 동되는 경우 | 갱신 | |

-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 o 가맹본부는 배달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지역을 정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가 될 수 있어 배달영업지역을 강제하지 않으나 가맹점사업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경쟁 또는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이춘명숙성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의 경영정책에 따라 향후 공급할 수 있습니다.
-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ㅇ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의 경영정책에 따라향후 공급할 수 있습니다.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 | |
|------|-----------------------|----------|---------------|--------|--|
| 연도 | 오프라인 판미 | ㅐ 매출액 비중 |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
| | 가맹점 | 기타 오프라인 | 자사 온라인몰 | 기타 온라인 | |
| 2023 | 0 | 100 | 0 | 0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 연도 |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
|------|--------------|-------------|
| 2023 | - | - |

o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만 운영하고 있으므로 가맹점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 o 이춘명숙성회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또한,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포괄적 승계를 원칙으로 하므로 양수인의 계약기간은 당사와 귀하가 체결한 계약의 잔여 계약기간 동안만 계약일로 인정하며 이 계약이 만료될 경우 가맹계약서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재가맹비가 발생됩니다. 귀하는 양수인에게 본 내용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계약서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 o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순 서 | 기간(계약만료일: D-day) |
|--|---------------------|
|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 D-180 ~ D-90 |
|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 D-180 ~ D-90 |
|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 D-180 ~ D-90 |
|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 습니까? 예→B, 아니오→A | ①+15일 이내 |
|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 |
|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 니까? 예→B, 아니오→D | |
|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예→B, 아니오→® | D-180 ~ D-90 |
|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 D-60일 이전 |
|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D-day |
|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 D-day |
|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D-day |
|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 |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 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 |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 ㅇ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갱신요구 거절 사유 | 관련 계약조문 |
|---|---|---------|
| 0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34조 3항 |
| 0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 하지 아니한 경우 | 34조 3항 |
| 0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 을 하지 못한 경우 | 34조 3항 |
| 0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 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34조 3항 |
| 0 | 이춘명숙성회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34조 3항 |

| 0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 |
|---|---|--------|
| |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 34조 3항 |
| | 제외합니다.) | |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ㅇ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계약 해지 사유 | 관련 계약조문 |
|---|---------------------------------------|---------|
| 0 | 가맹계약상의 금전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35조 1항 |
| 0 | 가맹계약서 제4조 가맹점의 표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35조 1항 |
| 0 | 가맹계약서 제11조 영업지역 규정을 위반한 경우 | 35조 1항 |
| 0 | 가맹계약서 제14조 인테리어 및 설비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35조 1항 |
| 0 | 가맹계약서 제15조 교육·훈련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35조 1항 |
| 0 | 가맹계약서 제16조 보험의 가입 규정을 위반한 경우 | 35조 1항 |
| 0 | 가맹계약서 제17조 개점승인 규정을 위반한 경우 | 35조 1항 |
| 0 | 가맹계약서 제18조 영업의 표준화와 판매가격 규정을 위반한 경우 | 35조 1항 |
| 0 | 가맹계약서 제19조 영업일 규정을 위반한 경우 | 35조 1항 |
| 0 | 가맹계약서 제20조 복장규정을 위반한 경우 | 35조 1항 |
| 0 | 가맹계약서 제21조 물품 등의 주문 및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 35조 1항 |
| 0 | 가맹계약서 제22조 물품의 하자와 책임범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 | 35조 1항 |
| 0 | 가맹계약서 제23조 대금의 결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35조 1항 |
| 0 | 가맹계약서 제26조 광고 및 판촉 규정을 위반한 경우 | 35조 1항 |
| 0 | 가맹계약서 제27조 보고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 35조 1항 |
| 0 | 가맹계약서 제28조 영업비밀유지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 35조 1항 |
| 0 | 가맹계약서 제29조 경업금지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 35조 1항 |
| 0 | 가맹계약서 제30조 감독 및 시정요구 규정을 위반한 경우 | 35조 1항 |
| 0 | 가맹계약서 제31조 손해배상 규정을 위반한 경우 | 35조 1항 |
| 0 | 가맹계약서 제32조 영업의 양도 규정을 위반한 경우 | 35조 1항 |
| 0 | 가맹계약서 제33조 영업의 상속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35조 1항 |

o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o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 즉시 계약 해지 사유 | 관련 계약조문 |
|-----|--|---------|
| o 7 | l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35조 2항 |
| o 7 | 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35조 2항 |
| | 선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 할 수 없게 된 경우 | 35조 2항 |
| o 7 | l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 35조 2항 |

| 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 | |
|---|---|
| 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 |
|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 ar 자 a 하나 |
|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 35조 2항 |
|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 | |
| 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 |
|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 | ᇬᅎᇰᇶ |
| 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 | 35조 2항 |
|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 | |
| 우는 제외한다. |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35조 2항 |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 | |
| 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 | 35조 2항 |
| 려운 경우 | |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35조 2항 |
| | 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등 그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기간을 합산한다)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 |

o 귀하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는 1개월 전에 당사에 계약해지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가맹계약의 종료시까지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가맹점을 정상 운영하여야 합니다.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 o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의 서면 합의를 거쳐 계약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재조정 절차 | 동의 절차 |
|---------------------------|----------------------------|
|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동의 여부 |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
|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 날부터 효력 발생 |

o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변경된 계약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존 계약내용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ㅇ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와 관련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o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 가능 조건 | 양도 절차 | 비고 |
|------------------------|--|----|
| 양수인이 당사가 성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양수인 면담 포함)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

- o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계약이행보증금,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양수인은 신규 가맹계약과 동일한 가맹비를 추가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o 양수인에게 양도한 가맹점사업자는 양수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와 계약한 영업지역내에서 본 계약과 동종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 o 당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이루어진 양도 등은 효력이 없으며, 당사는 귀하와의 가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 o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가맹점운영권을 대리로 행사하거나 업무를 위탁할 수 없습니다.
- o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 구분 | 가능 여부(조건) | 이전 범위 | 절차 | 기타 의무사항 |
|------|---------------|---------|----------|-----------------|
| 사소 | 가능 | 모든 권리의무 | 양도절차와 동일 | 교육수료 및 상기 양수인의 |
| 상속 | (상속인 사후 통지 시) | | | 지급비용과 동일한 비용 지급 |
| 대리행사 | 불가 | | | |
| 업무위탁 | 불가 | |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1) 경업금지의 범위
- o 당사는 귀하가 계약기간과 계약종료 후 6개월 동안 귀하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이춘명숙성회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당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업금지 되는 업종 | 경업허가 절차 | 비고 |
|--------------|--------------------------------|-------------|
| 회(숙성회)를 주메뉴로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 | 문의: 당사 |
| 판매하는 업종 | 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 (1544-7161) |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 ㅇ 당사는 이춘명숙성회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시간 | 영업일수 | 비고 |
|--------------------------|------|-------------------|
| 매일 오전10시~오후 10시(매일 12시간) | 연중무휴 | 문의: 당사(1544-7161) |

ㅇ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

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o 귀하는 무단으로 휴업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당사와 사전 협의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o 귀하가 부득이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당사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o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하고 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 o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사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근로관계 및 종업원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 귀하는 원활한 가맹점 운영을 위해 종업원을 관리하고 지도하여야 합니다.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 o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리・감독 항목 | 감독 절차 | 빈도 및 시기 | 담당 부서 | 비고 |
|------------------|----------------|------------|-------|----|
| 가맹점 위생, 재고관리, | 담당자 매장 방문 → 점검 | | | |
| 회계처리, 각종설비관리, | 또는 관리표 작성 → | 필요시 | 가맹본부 | |
| 원 · 부재료관리, 고객관리,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 걸쓰시 | 기하는구 | |
| 메뉴관리 등의 운영 상태 | 서명 → 완료 | | | |

ㅇ 점검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로 공지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 o 당사는 이춘명숙성회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ㅇ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할 경우 가맹사업

| 구분 |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 | | 분담 절차 | 비고 | | |
|-----|--------------------|---------|-------------------|-------------------|------|--|
| 一下正 | 9T 94 | 본사 | 가맹점 | 군급 글시 | -1T. | |
| | 상품광고 | | | 계획 공고 → 가맹점 분담금 | | |
| 광고 | 상품광고 | 광고비 30% | ·고비 30% 광고비 70% 선 | 산정 → 분담금 통지 → 분담금 | | |
| 요ㅠ | +가맹점모집광고 | | | 지급 | | |
| | 가맹점 모집광고 | 전액 | 없음 | - | | |
| | | 기하비요 | 판촉물 | 행사계획 공고 → | | |
| 핀 | <u>·</u> 촉행사 | 기획비용 | 구입비용 | 가맹점 분담금 산정 → 분담금 | | |
| | | 100% | 100% | 통지 → 분담금 지급 | | |

법에서 정한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동의 또는 사전 약정을 받아 진행합니다.

- o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할인비용이나 제공하는 경품·기념품 등의 비용, 판촉활동을 위한 통일적 팸플릿·전단·리플렛·카탈로그의 제작비용,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발행비용 등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 o 전국단위 광고의 가맹점부담액은 가맹점부담액 총금액을 가맹점 매장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 o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 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본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o 광고·판촉비용의 소모적인 낭비를 줄이고 다른 가맹점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본부 또는 당사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o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 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 o 귀하는 이춘명숙성회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 o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o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 제31조 손해배상

- ①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이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이 계약이 제35조(계약의 해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한 당사자는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해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이 기간만료, 해지, 가맹점운영권 양도 등으로 종료될 경우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액을 계약이행보증금과 상계하여 정산할 수 있으며 정산내역서를 교부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한다.
- ④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 등의 귀책사유로 가맹본부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지체 없이 가맹본부에 통지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⑤ 가맹점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각호의 규정에 따라 가맹본부에 위약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메뉴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위약금 일금오백만원(₩5,000,000)
 -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물품을 사용하지 않고 자점매입한 경우 위약금 일금일천만원(₩10,000,000)
 - 3. 가맹점사업자가 영업비밀유지의무 또는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약금 각 일금오천만원 (₩50,000,000)
- ⑥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이 계약의 이행이 천재지변, 사회재난, 전쟁, 내란, 정부의 규제, 노동 쟁의 발생 등의 사유에 의해서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다. 다만, 당사자는 계약의 이행 불능이나 지연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를 조금이라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⑦ 제36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 제1항에 규정된 영업표지 등의 철거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지연 보상금(지체 일수 × 300,000원)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한다.
- ⑧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일체의 금전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⑨ 가맹본부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 · 신용을 훼손하는 등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의무가 있다.
- ⑩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 ·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본부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의무가 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o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내용 | 소요기간 | 소요비용 |
|-------------------|--|-------------|----------------------------------|
| 합계 | | 45일 내외 |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 D-45 | |
| 사업 설명·상담 |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 D-44 |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필요 시 실시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
| 가맹계약 체결 | - 계약 체결 | D-28 | 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금 예치 | - 가맹금 예치 또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체결 | D-28 | 기((대) 글 급포에서가 다릅니다. |
| 점포실측/설계 | - 투자비 산출 | D-27~25(3일) | |
| 실내외 공사착수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24(1일) | |
| 인테리어 공사 | - 공사 실시 | D-24~5(20일) | |
| 교육 실시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15~2(14일) | |
| 점포 개설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day | |

- o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o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 o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 o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 o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o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 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 점포환경개선 사유 |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 지급절차 | 비용부담 제외사유 |
|---|---|-----------------|------------------------------|--|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 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 함으로 인하여 가맹 사업의 통일성을 유 지하기 어렵거나 정 상적인 영업에 현저 한 지장을 주는 경 우 |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 내건축공사에 소요 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 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 | 는 이전을 수반 | 구(공사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 이 종료(계약의 해 지·영업양도 포함) 되는 경우 가맹본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o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o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대상 및 내용 | 절 차 | 비용부담 | 비고 |
|----------------|---|---|------------------|-------------|
| 가맹본부 요청 시 | 1. 상품에 따른 마케팅 방법 등 경영지도 2. 해당 지역의 특성과 시장동향 분석에 따른 개 별 가맹점의 운영방안 지 |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경영활성 화나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가맹점에 방문하 거나 유선상으로 관련된 지도 를 할 수 있음 | 가맹본부 부담 | 문의: 당사 |
|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 도 3. 가맹점 운영에 따른 제반 문제점 발생 시 그 해결을 위한 경영지도 | 필요 시 가맹본부에 요청하고 가맹본부는 경영지도를 위한 방법 및 일정을 안내하고 이를 귀하가 동의하면 진행함 | 가맹점사업자 부담(실비) | (1544-7161) |

4. 신용 제공 등 내역

o 당사는 이춘명숙성회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ㅇ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W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o 당사는 이춘명숙성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요내용 | 교육방식 | 기한 | 비고 |
|----------|----------------------------------|---------------|-------|-------|
| 신규 교육 | 회사 소개, 조리 교육, POS 사용, 입금 방법 등 | 실습교육 집단 강의 | 개점 전 | 필수 교육 |
| 보수/수시 교육 | 신메뉴 교육, 종업원 관리 실무 등 | 실습교육 | 별도 공지 | 필요시 |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o 귀하가 이춘명숙성회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최소시간 | 비용 | 비고 |
|----------|--------------|------------|------------|
| 신규 교육 | 10일(1일 10시간) | 최초 가맹금에 포함 | 최초 계약 시 이수 |
| 보수/수시 교육 | 1일 | 실비 | 필요시 |

o 신규교육 시 가맹점사업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채용한 직원이 가맹본부가 정한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으로 추가 교육을 받고 이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개점이 지연되는 경우 이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3. 교육・훈련의 주체

o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o 귀하가 기한 내 신규 교육 또는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공급중단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 불참에 대한 당사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재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 연반 | ! 지역 | 명칭 | 소재지 |
|----|------|--------------|---|
| 1 | 경기 | 이춘명숙성회 일산직영점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19, 112, 113호 (백석동, 더 루벤스카운티) |
| 2 | 인천 | 이춘명숙성회 검단직영점 | 인천 서구 바리미로 31 . 108, 109호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년, 개월)

|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 비고 |
|---------------------|----|
| 약 1년 5개월(521일) |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 · 매출액 |
|------------------|-------|
| 1,234,988 | |

ㅇ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1544-7161)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 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 1} <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 원·부재료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워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 o 당사의 경영정책에 따라서 물품명, 규격, 공급가격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ㅇ 가맹계약서에서 공급하는 물품(원 · 부재료) 등의 내역이 없을 경우, 운영매뉴얼이나 운영규정, 정 보공개서 등에 기재된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ㅇ 상기 물품 외에도 당사의 Brand 및 Logo가 새겨진 물품(공산품 등)과 당사의 이미지와 관련된 광 고물이나 판촉물은 당사가 직접 공급하거나 당사가 지정한 거래처에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거래상대방 강제여부가 권장인 품목은 가맹점사업자가 선정하는 업체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 주방 설비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 주방집기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 오픈 비품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 판매하는 메뉴 및 메뉴별 판매가격 >

| & | 남품 ∙ 용역명 | 권장가격(단위:원) | 위반 시 책임 | 비고 |
|----------------|--------------------------------------|------------|----------------------------------|-----------------|
| 숙성회모둠(숙성 | 중(2~3인) | 59,000 | | 숙성삼치는 |
| 광어+숙성연어+숙 | 대(3~4인) | 79,000 | | 11월~2월에만 |
| 성도미+숙성삼치) | 특(4~5인) | 91,000 | | 판매 |
| | 숙성광어(1인) | 25,000 | | |
| | 숙성연어(1인) | 25,000 | | |
| 단품숙성회 | 숙성도미(1인) | 25,000 | | |
| | 숙성삼치(1인) | 25,000 | | 11월~2월에만 판매 |
| | 1 번 세 트 (우삼겹표고솥밥2인+얼큰매운탕) | 15,000 | | |
| 셋트메뉴 | 2번세트 | 17,000 | | |
| <u> </u> | (연어or도미머리구이+얼큰매운탕) | 17,000 | | |
| | 3 번 세 트 (삼치or방어머리구이+얼큰매운탕) | 19,000 | | |
| *L+I [] HII \L | 5pcs | 17,000 | | |
| 참치대뱃살 | 10pcs | 29,000 | | |
| 숙성뱃살 | 중(2~3인) | 75,000 | | |
| 스폐셜(참치대뱃살 | 대(3~4인) | 89,000 | | 숙성삼치는 |
| +도미뱃살+연어뱃 | , | <i>,</i> | | 11월~2월에만 |
| 살+광어지느러미+ | 특(4~5인) | 105,000 | 1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 판매 |
| 숙성삼치) | , , | · |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 |
| | 마끼밥 | 4,000 | *2회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 최초 | 밥만추가시 2,000원 |
| | 고노와다 | 9,000 | 시정 요구한 날부터 | |
| | 모둠튀김 | 17,000 | 2개월 후에 계약해지 | |
| | 뽈락튀김(2마리) | 10,000 | | |
| | 수제새우튀김(4pcs) | 9,000 | | |
| | 얼큰매운탕 | 9,000 | | |
| | 닭가라아게 | 14,000 | | |
| | 닭껍질튀김 | 10,000 | | |
| | 도미머리 갈비살구이 | 14,000 | | 한정수량 |
| | 연어머리 갈비살구이 | 14,000 | | 한정수량 |
| 사이드메뉴 | 삼치머리 갈비살구이 | 16,000 | | 11월~2월에만 |
| 1 1— "'' | 방어머리 갈비살구이 | 16,000 | | 판매 |
| | 진미셋트(성게알+관자+연어알 +참치뱃살+아보카도) | 51,000 | | |
| | 판우니(성게알) 아보카도 | 49,000 | | |
| | 명란구이 아보카도 | 14,000 | | |
| | 해물부추전 | 12,000 | | |
| | 굴전 | 20,000 | | 10월~3월에만 판매 |
| | 초밥(4pcs) | 6,000 | | 밥만추가시 2,000원 |
| | 우삼겹 표고솥밥(2인) | 10,000 | | |
| | 공기밥 | 1,000 | | |

| | 야채나베 | 5,000 |
|--------|------------------|---------|
| | 소주, 맥주 | 6,000 |
| | 하이볼 | 8,000 |
| | 고창복분자주 | 9,000 |
| ᄌᄅ | 화요25+(토닉워터3병+레몬) | 35,000 |
| 주류 | 일품진로+(토닉워터3병+레몬) | 35,000 |
| | 음료수 | 2,000 |
| | 토닉워터+레몬(반개) | 2,000 |
| | 레몬추가(한개) | 2,000 |
| | 청하 | 5,000 |
| | 토닉워터 | 1,000 |
| | 숙성물회(소) | 31,000 |
| 여름특선메뉴 | 숙성물회(중) | 42,000 |
| | 숙성물회(대) | 56,000 |
| | 숙성대방어(중) | 75,000 |
| | 숙성대방어(대) | 85,000 |
| | 숙성대방어(특) | 105,000 |
| | 숙성대삼치(중) | 59,000 |
| 겨울특선메뉴 | 숙성대삼치(대) | 79,000 |
| | 숙성대삼치(특) | 91,000 |
| | 숙성대방어+숙성연어(중) | 69,000 |
| | 숙성대방어+숙성연어(대) | 84,000 |
| | 숙성대방어+숙성연어(특) | 99,000 |